

위원선임 및 개선(안)

□위원선임

| 소 속 | 의 원 명 | 선 임 사 항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새정치국민회의 | 정 현 균 |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|
| | 구 철 회 | |
| 한 나 라 당 | 장 진 국 | |

□위원개선

| 소 속 | 의 원 명 | 선 임 사 항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나라당 | 이 성 구 |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→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|
| | 이 철 호 |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→행정자치위원회 위원 |

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
1998. 10. 13
운영위원장

I. 주문

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.

II. 관계규정

○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

○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III.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

'98.11.21(토)~11.30(월) 10일간

IV.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

1.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운영 13130-91('98.10.7)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
2. 기본계획 채택

가.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

나.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

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
번호 108

발의년월일:1998년 10월 12일
발 의 자:이용부의원 외 11인

1. 주 문

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

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7조
- 서울특별시의회회규칙 제70조

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○출석요구일 : 1998년 10월 14일~10월 15일(2일간) 오전 10시

○출석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
○출석이유 :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

【서울특별시】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(3)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사장,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이상 소속 공무원

【서울특별시교육청】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이상 소속 공무원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
번호 91

1998. 10.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

1998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

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1998년 10월 12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시정개혁단장 장인송)

가. 제안이유

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·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시정개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(가) 위원회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함.(안 제2조)

- (1) 시정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
- (2)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
- (3) 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- (4)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(나)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(1) 위원수 : 위원장 2인 포함 21명 이내
- (2) 의 장 : 행정(1)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공동 수행
- (3) 위 원 :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

(다) 실무위원회(안 제5조)

- (1) 위원수 : 위원장 2인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
- (2) 위원장 : 본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
- (3) 위 원 :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
- (4) 기 능

(가)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검토·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

(나)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

(다)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

(라) 의견청취 등(안 제6조)

○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 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,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
(매) 간 사(안 제8조)

○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둠.

(배) 수당 등(안 제9조)

○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

다. 참고사항

(가)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

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(구 내부부장관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나) 예산조치 :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등 '9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김동수)

○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이며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구현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자문기능의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제106회 임시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의결 보류되고, 제108회 임시회의시 기획경제위원회안, 의원발의 수정안, 원안 등 3개안 모두가 부결됨에 따라

○서울특별시장이 당초 제출한('98.7.11) 조례안 제3조(구성등) 제1항의 위원수를 20인에서 21인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의 위원위촉에 "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"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금번 제출한 것으로

○동 사항은 제106회, 제108회 임시회의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

의견은 없습니다.

- 4. 질의·답변 : 생략
- 5. 심사결과

○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8명 전원 일치)

- 6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 개혁에 관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- 1.시정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
- 2.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
- 3.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- 4.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
- 5.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제4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이
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

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등 개혁방안 구체화
- 2.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
- 3.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 검토

제6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조사·연구의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